

검수 규정

제정일 : 1979.08.01

개정일 : 2009.06.01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내자 또는 외자로 구매되는 모든 물품과 외부로부터 수증받은 물품수입에 관하여 그 검수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본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구매업무규정 제 2 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② 이 규정에서 검수라 함은 “물품구매발주서”, 수증관계 서류와 납품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대조하여 현품이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연세의료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소관부서) ① 검수는 기획실 평가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9. 6. 1>

②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하여 검수케 할 수 있다.

③ 평가팀장은 검수에 사용할 인장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제 5 조(사전사용금지) 구매 또는 수증받은 물품은 검수담당자(검수권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 6 조(검수거부) 검수거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① 구매 절차가 종결된 "물품구매발주서"가 없거나 구매팀장 또는 해당 기관장의 검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검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1>

② 다음에 해당할 때는 검수를 거부하여 관계문서를 즉시 구매팀 또는 해당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1>

1. "물품구매발주서"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청구서와 현품이 상이한 경우
3.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5. 현품과 가격이 상이한 경우
6. 제조회사가 발행한 정품확인서 또는 제품보증서가 없는 경우
7.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제 7 조(검수의 원칙) ① 검수담당자는 품질 수량 기타 납품조건에 합당한가를 보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입하는 전 물품에는 제조회사 정품확인서(또는 제품보증서) 및 시방서, 도면, 카다록에 의하여(외제물품은 수입 면장 요) 검수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되면 계약서 사본 및 시방서, 도면 등을 첨부(건본이 있을 때는 건본 제시 및 소재 명시)하여 평가팀에 송부한다.<개정 2009. 6. 1>

④ 품질에 대한 성분 또는 함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 내의 기관이나 기타 공인기관에서 시험의뢰를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에서 물품구입을 발의할 때에는 검수에 필요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서류가 없는 것은 검수를 할 수 없으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발주처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의 2(자체검수) ① 학군단은 자체 검수한다. (건당 가격은 10 만원 미만으로 제한함)

② 체육위원회, 법현학사에서 구입하는 음식재료는 그 특성상 자체검수한다.

③ 학술정보원에서 구입하는 도서류는 자체검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④ 자율운영기관은 50 만원 이하의 구매 건에 한하여 자체 검수할 수 있다.

제 8 조(입회의 요령) 다음의 경우에는 검수책임자가 관계자의 입회를 요구한다.

① 특히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하여서는 발주처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한다.

제 9 조(검수확인) 재무회계팀에서는 반드시 검수필인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가 생략된 50 만원 이하의 물품대금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1>

제 10 조(입고 및 관리) 납품된 물품중에서 장기불출을 요하는 것은 관계주임의 책임하에 창고에 보관케 한다. 다만, 즉시 사용할 성질의 물품은 검사하여 발주처에 인계하여 사용 관리하게 한다.

제 11 조(비품) 구입물품 중에서 비품에 속하는 물품은 비품등록 필하도록 관계서류를 관재팀에 이송한다. <개정 2009. 6. 1>

부 칙

(1) (예외)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한 경우는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197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6 조, 제 9 조)은 1994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2 조,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은 2000 년 10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4 조, 제 6 조, 제 7 조, 제 7 조의 2)은 2001 년 8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7 조의 2)은 2001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2 조, 제 4 조, 제 7 조, 제 7 조의 2)은 2004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7 조의 2 제 4 항)은 2006 년 1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 4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제 7 조 제 3 항, 제 7 조의 2 제 3 항, 제 9 조, 제 11 조)은 2009 년 6 월 2 일부터 시행한다.